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무탄소 전환 및 신산업 전환 등〉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08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5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5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9
2. 조문별 검토	13
가. 총칙(안 제1조~제5조)	13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추진체계 구축(안 제6조~제8조)	23
다.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해제 등(안 제9조)	31
라. 각종 지원 시책 추진(안 제10조~제14조)	33
마. 금융·재정 및 인프라 지원(안 제15조 및 제20조~제24조)	38
바. 연구·인력양성 및 고용지원(안 제16조~제19조)	44
사. 통계·실태조사 및 보칙(안 제25조~제27조)	50
※ 참고자료	5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2.
3. 회부연월일 : 2025.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 균형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글로벌 산업구조의 급변 속에서 기존의 전통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국가 경제의 중심축인 인공지능(AI) 기술, 미래자동차, 사물인터넷,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은 대부분 그 근거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 유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은 고령화, 지역 소멸, 경제 침체 등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결국 노후한 국가산업단지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

심 기술과의 융합과, 청년 인재 유입 등 산업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기존의 산업단지를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더불어, 글로벌 친환경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과 같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함.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RE100 기반의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통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인 전통 제조업이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융합되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인재 유입,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무탄소 전환으로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지능화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라. 정부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의 융합 등 신산업 전환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착공 후 40년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
- 마.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신산업 육성, 산업단지의 디지털전환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 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의 극복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

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지역산업 균형발전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투자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환 등 미래기술연구의 조사·교육 및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인재 유입과 확보를 위하여 주거환경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지역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과정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9조).

카. 지역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등에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1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국가산업단지는 오랜 기간 우리나라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고용 창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비수도권 국가산업단지는 전국 국가산업단지 53개 중 45개(84.9%)에 달하고 면적 기준으로는 75.8%, 고용인원 기준으로는 51.9%, 수출액 기준으로는 85.5%를 차지하면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음.

[표 1] 국가산업단지 지정·운영현황

유형	단지수 (개)	면적 (km ²)	입주기업체 (개사)	고용인원 (명)	수출액 (천달러)
산단전체	1,330	1,471	128,593	2,379,470	443,459,572
국가산단	53	798	67,558	1,098,785	234,135,819
수도권	8	193	50,351	528,723	33,894,135
비수도권	45 (84.9%)	605 (75.8%)	17,207 (25.5%)	570,062 (51.9%)	200,241,684 (85.5%)

주: 2024년 12월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최근 글로벌 저성장과 주력산업의 둔화, 4차 산업혁명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한계에 봉착하였고, 그 중에서도 국가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 운영, 노후산단 증가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¹⁾.

이에 따라 노후국가산업단지가 다수 위치한 비수도권 지역은 청년 인재 유입 저하, 지방의 저출생·고령화와 경제침체 등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지역 불균형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그리고 수도권은 성장성이 높은 첨단기업 및 청년 인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²⁾³⁾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첨단화, 주거여건 개선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정안은 기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혁신과 디지털 전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저출생·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

또한 제정안은 신산업 육성, 산업단지의 디지털전환 지원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개발·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

1)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산업부 보도자료, 2023. 8. 24.

* 산단 내 기업수 비중: 반도체·디스플레이·정보통신기기 3.6%, 기계·금속·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96.4%

** 착공 후 20년 경과한 산단 수: ('10) 258개 → ('22) 471개 → ('25년) 526개 예상

*** 편의시설 수: (1만명당 카페수) 전국평균 45개 vs. 노후산단 11개

(1만명당 편의점수) 전국평균 16개 vs. 노후산단 3개

(인천남동국가산단 주차장) 일일 주차 수요 16,202대 vs. 확보된 주차공간 10,750대

2) '수도권 공화국' 심화...첨단산업 몰려 'GDP 70%', 한국경제, 2024. 4. 1.

한국은행은 성장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이런 불균형 성장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반도체·바이오 등 성장성 높은 첨단기업이 모여들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부진한 자동차·화학제품·기계산업 등이 포진했다는 설명이다.

자료: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4032952271>

3) "첨단기업 수도권 몰리자 청년층도 몰렸다", 뉴시스, 2024. 7. 31.

상익은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20·30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와 교통 접근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정주환경이 갖춰져야 청년들의 비수도권 거주를 촉진할 수 있다"며 "안정적 소득을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료: https://www.news1.com/view/NISX20240730_0002831793

성을 통해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이는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53.5%, 전체 산업부문의 83.1%를 차지하고 있고, 석유(51.4%)와 석탄(23.7%)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성이 높아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가 시급하다⁴⁾는 점을 고려한 것임.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중에서도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기반시설과 생산설비의 노후화를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산업단지의 신산업 전환과 친환경 전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위기 극복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다만, 제정안은 신산업 전환 외에도 무탄소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 청년인재 유입 등 고용활성화 및 지역산업균형발전을 모두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노후거점산

4) 「탄소중립과 RE100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구상」, 국토연구원, 2023. 11. 27., 국토이슈리포트 제80호

단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현행 법률에서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산업단지의 고도화, 기반시설 지원, 고용촉진 등의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역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균형발전과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고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존 유사 법률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상 일관성 및 통합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총 27개 조문과 부칙(시행일)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선, 제1장 총칙(안 제1조~제5조)에서는 특별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정책의 시범실시와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2장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정부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도 설치하도록 함.

다음으로, 제3장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시책의 추진 및 지원(안 제9조~제25조)에서는 정부가 신산업 전환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지정·변경·해제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그리고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신산

업육성과 고용활성화 시책을 마련·추진하는 한편, 지역과학기술 및 인공지능·로봇 산업 관련 연구·교육기관 육성 및 인력확충을 위한 시책, 신산업 전환과 연계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시책, 신·재생에너지 개발·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지원하여 지역투자자본을 확충하며 지역산업 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를 지정·지원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지원하며,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건강·주거환경 조성·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인재양성 과정 및 자금 등을 지원하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산업기반시설을 조속하게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며,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동 제정안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통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마지막으로, 제4장 보칙(안 제26조 및 제27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산업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 및 위탁받은 기관·법인의 임직원을 형법상 공무원 신분의 범죄조항 위반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도록 의제하고,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표 2] 제정안 목차

장	조 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정책의 시범실시)
	제5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제2장 지역산업균형 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기획단)
제3장 지역산업균형 발전 및 고용활성화 시책의 추진 및 지원	제9조(지역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제10조(지역 신산업 육성과 고용활성화 시책 마련)
	제11조(지역과학기술 및 인공지능·로봇 산업의 진흥)
	제12조(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제13조(지역국가산업단지 중심 스마트 도시 전환을 통한 지역발전역량 강화)
	제14조(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장	조 문
	제15조(지역 투자 자본의 확충)
	제16조(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 지정 등)
	제17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제18조(청년고용활성화 시책의 추진)
	제19조(지역국가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인재확보 지원)
	제20조(지역국가산업단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제21조(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및 운영 지원)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24조(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25조(지역산업균형발전 통계 및 실태조사)
제4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일) 공포 후 1년 경과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안 제1조~제5조)

1)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는 제정안이 지역국가산업단지 혁신, 청년고용 활성화, 디지털·무탄소전환 및 지능화산업단지 구축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임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안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해당 단지에 지능화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신산업 전환으로, 고용인력의 유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을 고용활성화로 각각 정의함.

[표 3]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고용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무탄소 전환으로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지능화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로서 지역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조에 따른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제정안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2. “신산업 전환”이란 지역국가산업단지에서 지능화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고용활성화”란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신산업 전환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통하여 고용인력의 유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문화와 신산업이 융합되어 유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것을 말한다.

우선, 제정안의 목적 조문은 최종적인 정책목표를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 혁신, 청년고용 활성화, 디지털·무탄소 전환 및 지능화 산업단지 구축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그런데 해당 조문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하면서 정책수단별 효과를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법은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무탄소전환 및 디지털전환을 통하여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지능화 산업단지를 구축함으로써 청년 고용활성화와 지역산업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으로 수단-목적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의 정의 규정 중 지역국가산업단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로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되는데

‘지역균형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9조에 따라 지역국가산업단지 지정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문언의 명확성·간결성 측면에서 정의규정에서도 “제7조에 따른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포함·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은 신산업·첨단산업 중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한 경우로 한정하여 ‘신산업 전환’을 정의하는데 이는 동 제정안의 입법목적이 세계적인 수준의 지능화 산업단지 구축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안 제9조에서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의 융합 등 신산업 전환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산업 전환 필요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첨단기술·산업의 범위가 정의규정보다 넓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제정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정합성있게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고용활성화’는 “고용인력의 유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청년 문화와 신산업의 융합을 통한 유기적 성장”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고용활성화 시책 수립 및 지원시 신산업과 관련한 청년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해당 용어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음.

‘지역산업균형발전’은 핵심 정책목표로써 다수 조문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지역균형발전’⁵⁾ 용어도 규정·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간 혼선이 없도록 이를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국가 등의 책무 및 정책 시범실시(안 제3조 및 제4조)

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는 국가가 필요한 경우 특정 산업단지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시범실시할 수 있도록 함.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표 4]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산업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 및 예산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안 제4조에 따라 정책을 시범실시함으로써 산업단지별 지역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적 오류·미비를 사전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특정 산업단지에 대한 시범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은 개별 정책의 내용과 실행방식을 규율하는 실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칙규정은 법률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4조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안 제5조)

안 제5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을 제외하고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우선시하도록 함.

[표 5]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5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①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되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간 상충가능성을 방지하고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그리고 동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함을 규정하면서도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시설 관련 계획에는 예외를 두어 계획간 위계를 명확하게 규정함.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도 각각 유사한 목적 및 대상을 지원·진흥하고 있는데, 「산업집적법」은 전반적인 산업정책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균형발전 추진, 「노후거점산업법」은 노후거점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등, 「산업입지법」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개발, 산업단지재생사업 등을 규율하고 있음.

먼저, 제정안은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⁶⁾⁷⁾과 비교할 때 ① AI, 사물인터넷기술을 중점적으로 도입하고, ② 지정 범위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며, ③ 40년 이상된 노후산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④ 지역공공은행 설립, 기반시설 예타면제 등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스마트그린산단이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다는 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한다는 점,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촉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국가산업단지와 기본적인 추진 목적 및 지원내용이 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관련 조문 목록 제2조(정의)

제7조의5(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조의7(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4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사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노후거점산단법」으로 추진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과 비교하면, ① 지정범위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고 ② 노후거점산단과 달리 20년 이내에 조성된 산업단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분되지만,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 산업집적·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역국가산업단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표 6]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

제2조(정의)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경관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자원기술의 개발사업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산업단지 내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이 위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사업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에 대한 지원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2)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마.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지막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비수도권 지역 등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자율계정으로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지역지원계정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지역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산업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과 목적 및 사업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추진체계 구축(안 제6조~제8조)

안 제6조는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의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5년마다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리고 안 제7조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해제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의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표 7]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6조(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신산업 육성과 고용활성화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제정안

4. 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계획 등 사업추진계획
5. 사업추진을 위한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6. 그 밖에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정부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전환, 기술의 융합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2.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3. 제9조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신산업 전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투자 자본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청년고용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사업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정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역국가산업단지와 지역산업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협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산업·연구·교육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에 간사 위원 1명을 두며, 간사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진기획단장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기획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기획단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법률에 따라 정부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그런데 이미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각종 계획이 수립되고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별도 계획 및 위원회를 신설할 때

중전 계획 및 위원회와의 중복가능성 및 효과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우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현행 법정계획과 비교해보면,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시책추진을 심의·의결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기본계획과 유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성장유망산업 입지수요, 인력수급,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및 낙후·쇠퇴한 산업단지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점에서 역시 유사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계획도 수립되고 있고,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의 연도별 확대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어 시행계획 역시 기존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8] 제정안 기본계획과 현행 법정계획간 비교

계획명	계획 수립사항
제정안 기본계획	1.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2.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3. 제9조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신산업 전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명	계획 수립사항
	6. 지역 투자 자본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청년고용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사업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 (「산업집적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와 기존 위원회간 기능·역할을 비교하면, 지방시대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산업입지정책 심의회는 산업단지기반시설 지원, 재생사업지구 승인에 관한 사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는 20년 이상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를 지정하며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표 9] 제정안 위원회과 기존 위원회간 비교

계 획 명	계 획 수립사항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1.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2.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3. 제9조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신산업 전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투자 자본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청년고용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사업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시대 위원회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계 획 명	계 획 수립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산업입지법 시행령」)	1.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지정·변경·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7. 10. 4.> 7.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9.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 (「노후거점 산단법」)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2.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3.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경쟁력강화사업 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방안 6.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를 고려하면 제정안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은 대부분 지역균형발전 정책·계획·법령, 기반시설 개발·지원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노후거점산단의 경쟁력강화 등을 심의하는 기존 위원회들이 다루는 사항과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유사·중복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위원회와의 통합·조정 노력을 선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제정안 심사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해제 등(안 제9조)

안 제9조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산업 전환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시 착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표 10]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9조(지역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의 융합 등 신산업 전환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착공 후 40년 이상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면 안 제10조~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산업 전환·고용활성화 등 각종 시책, 인력확보, 기반시설 조성, 재정지원 및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되므로,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특히 40년 이상된 국가산단(참고자료 참조)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므로 기반시설 노후화 및 산업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신산업 전환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정의규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므로, 안 제9조에서는 해당 절차의 이행 시점·방식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신산업 전환’은 앞서 정의조항에서 “지능화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AI 및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는데, 안 제9조에서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의 융합 등 신산업 전환”으로 표현하여, 첨단기술 융합이나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여 보다 폭넓게 산업구조를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호 통일성있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라. 각종 지원 시책 추진(안 제10조~제14조)

안 제10조~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는 지역 신산업 육성과 고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산학협력, 인력양성 및 지원기관 확충 등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안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로봇 산업 관련 연구·교육기관 및 연구개발인력을 확충하고, 대학 등의 첨단학과 설치 및 지역국가산업단지 연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그리고 안 제12조는 지역국가산업단지에서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책을 신산업 전환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의 제조업 디지털전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는 지역국가산업단지 중심의 스마트도시 전환과 함께 청년 창업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시책을 추진하고 고용활성화 지역산업육성, 인재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 시설 확충 등이 연계되도록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기반조성, 관련산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표 11]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0조(지역 신산업 육성과 고용활성화 시책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신산업 육성과 고용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2.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3.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역국가산업단지 발전에 관한 시책 4. 첨단기술과 문화공간의 융합을 통한 산업단지 재구조화 사업 5. 산업단지 신산업 전환을 통한 청년고용활성화에 관한 시책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혁신체계 구축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과학기술 및 인공지능·로봇 산업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로봇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공지능·로봇 산업 관련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 육성 2.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인공지능·로봇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학과 설치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에서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책을 신산업 전환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국가산업단지 중심 스마트 도시 전환을 통한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정안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전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청년들의 창업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과 고용활성화에 중점을 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 도시 전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의 극복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외에도 AI·로봇산업 진흥, 제조업 디지털전환, 스마트 도시전환, 신재생에너지 사용촉진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다만, 안 제10조에 따른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시책은 기존 지침 및 시책과 정책 대상 및 수단, 사업내용 등이 유사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존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하고,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있음.

다음으로, 안 제11조는 안 제10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실행과제 등을 부연하려는 취지로 보임. 안 제10조제1항제3호는 “AI, 로봇, 사물인터넷,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역국가산업단지 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교육기관 육성, 연구·개발인력 확충 및 대학등에 첨단학과 설치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시책’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추진하는 일정한 방향과 방침을 뜻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지원사업 근거 조문으로 조문 위치 및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12조제1항은 신산업 전환과 연계하여 제조업 디지털 전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조업 기업 위주로 AI, 사물인터넷기술 등을 도입하도록 하는 시책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안 제12조제2항은 제조업 디지털 전환 비용 지원사업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하면 조문 위치 및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13조는 스마트도시 전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데, 기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며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여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13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전환 시책은 기존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 및 지원시책과 수립·지원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최근 산업단지에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에너지구조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법」이 개정되었으므로⁸⁾, 제정안에서 수립하도록 하려는 시책과 기존 법률에 따른 계획·사업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8) [법률 제20442호, 2024. 9. 20., 일부개정], [시행 2025. 3. 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췌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가

마. 금융·재정 및 인프라 지원(안 제15조 및 제20조~제24조)

안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0조는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소부장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안 제21조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안 제22조는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3조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함.

[표 12]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5조(지역 투자 자본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 균형발전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투자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공공은행(지역 자본의 역외유출과 지역 간 격차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를 증진하는 대안금융 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주요한 조달 자금으로 삼아 지역사회가 공공금융기관을 소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자산을 형성하고,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은행을 말한다)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재정 건전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공공은행의 설립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국가산업단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행정적·재정

제정안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및 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해당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역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 산업기반시설 개발 및 운영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산업단지 원활한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제정안
있다. 제24조(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우선, 안 제15조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려는 내용으로, 최근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지방은행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 지역은행의 필요성이 제기⁹⁾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금융기관은 그 특성상 적정한 예금자보호방안과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제정안은 은행의 설립 및 재정지원 근거만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5년 1월에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¹⁰⁾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해당 제정안의 심사경과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20조는 입주기업체 중 소부장기업에 대해 행정적·재

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발전 방안 연구」, 한국지역학회, 2024. 11. 4.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보고서

10) 의안번호 7255, 송재봉의원 등 28인, 발의일 2025. 1. 6.

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된 다양한 업종 중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21조는 산업기반시설 개발 및 운영 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내용인데, 현행 「산업입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지원되고(§29), 공공시설은 설치 후 사업시행자 등에게 귀속되어 운영비용 부담주체가 정해져 있으며(§26),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가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29조의2).

[표 13] 「산업입지법」상 기반시설 조성·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귀속 주체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u>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 2.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u>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u>

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제정안과 같이 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개발 및 운영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존 법령과 관리·책임주체와 역할·비용분담이 모호해지게 될 것으로 보임.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법」 등 기존 법체계 내에서 정비하는 형식이 법적 정확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임.

다음으로,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기반시설 조성시 예타면제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조속하게 조성되고 입주기업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각 특례에 대해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과 같은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¹¹⁾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안 제24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제정안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계정 종류¹²⁾와 계정별 세입·세출이 각각 명시되어 있음.

특별회계는 매년 세입·세출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정 신설시에는 세입·세출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다른 계정과 함께 재정수지를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별도 법률에서만 계정 설치 특례를 두기보다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과 아울러 논의할 필요가 있음.

11) 타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기재부 (25.4.30.)	-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개별법이 아닌 예비타당성조사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 - 현행 국가재정법 체계에서도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 가능 - 또한, 개별법으로 예타 면제를 규정하는 것은 예타 제도를 형해화 시킬 우려
기재부 (25.4.29.)	- 개별법 상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익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도 배치됨 -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 가능
행안부 (25.5.8.)	- 지방세 감면 여부는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 - 제정안은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기존 지역 금융기관과의 업무 범위 중복으로 지역 금융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 존재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으로 구분한다.

바. 연구·인력양성 및 고용지원(안 제16조~제19조)

안 제16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래기술연구의 조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지정하고, 안 제17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중·고·대학 등을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인재의 유입과 확보를 위해 근로자 문화생활·복지, 주거환경 조성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안 제1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국가산업단지 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사내교육, 전문인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할수 있도록 함.

[표 14]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6조(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환 등 미래기술연구의 조사·교육 및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정안

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미래기술연구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래기술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래기술연구소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래기술연구소의 지정,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청년고용활성화 시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인재 유입과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제정안

2. 지역 외 청년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교육·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3. 그 밖에 지역인재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내용,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국가산업단지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지역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우선, 안 제16조는 미래기술 교육 및 연구개발을 위해 미래기술연구소를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¹³⁾에 따라 국가전략기술¹⁴⁾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지원하고 있음.

1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연구소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4)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선진 기술을 토대로 한 연구개발, 교육 등을 위해 산업기술연구조합도 설립·육성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미래기술연구소는 기존 법률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과 역할이 유사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17조는 지역국가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소기업과 학교를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0조¹⁵⁾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학교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¹⁶⁾을 실시하고 있음.

즉, 제정안은 기존 법률의 지원범위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축소·한정하는 내용이므로 별도로 신설할 실익이 적고, 사업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다르게 규정하므로 부처간 업무범위 조정을 논의할

1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중소벤처기업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개요

구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	중소기업,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지원 내용	①교육학습자료 개발,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지원, ②중소기업 채용 협약 취업 맞춤형 운영, ③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대학, 기업 및 근로자 간 계약체결 후 대학은 학위과정 운영, 학생은 일정기간 중소기업 의무근무하게 되며, 해당과정 학비를 지원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인재 유입·확보를 위하여 청년고용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¹⁷⁾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노후산단의 청년유입을 도모하는 한편 최근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24.9.)에 따라 문화산업단지로 선정¹⁸⁾하여 범부처 지원사업¹⁹⁾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17) 「청년기본법」 제4장 조문목록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8조(청년 창업지원)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18) 2025년 상반기 공모 결과 구미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완주일반산단 총 3개 선정

19)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부처별 지원사업 개요

소관 부처	사업명	주요 내용
산업부	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조성(문화브랜딩)	청년 디자인 리빙랩 운영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
	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조성(랜드마크)	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노후공장 내·외관 개선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조성	주요 가로 경관 개선
	청년문화센터 건립	청년 친화형 복합문화공간 구축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후 임대
	산단 환경개선펀드	정부 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 유치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산단 특화 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문화가 있는 산단)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활용 연계사업
	산단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	청년 공예가의 창·제작 공간 조성 지원
국토부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산단 기반시설 등 재개발
	노후산단 재생지원(융자)	민간시행 복합개발 리모델링 융자 지원

즉, 정부는 현행법 및 지원사업에 따라 청년인력을 산업단지에 유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는 지역국가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4조²⁰⁾에 따라 첨단전략산업(반도체·배터리 등)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분야에 대해 제정안과 동일하게 중소·중견기업 사내교육 등의 인재양성 지원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²¹⁾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산업단지로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4조(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4.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1) 고용노동부 관련 사업 개요

구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
지원대상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단체 및 연합체, 학교 등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 인력관리시스템 제공, 중소기업 공동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대·중소기업 상생형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지원 등	중소기업 재직근로자가 필요한 직무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행토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훈련비의 50%를 지원

사. 통계·실태조사 및 보칙(안 제25조~제27조)

안 제25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안 제26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장관 또는 시·도지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7조는 위원회 위원 또는 기관 종사자가 형법상 공무원 관련 범죄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과 같이 의제하여 처벌받도록 규정함.

[표 15]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25조(지역산업균형발전 통계 및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과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매년 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제정안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2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제정안과 같이 법정통계 및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또한 실제 집행과정에서 지역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활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장관 또는 시·도지사 업무를 각각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및 위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법」상 공무원 관련 범죄 적용시 공무원 의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참고

국가산업단지 지정현황 (2025. 6월말 기준)

구분	지역	국가산단명	관리기관	지정 연도	구분	지역	국가산단명	관리기관	지정 연도
1	서울, 인천	한국수출산업	산단공	1964	28	전북	익산	산단공	1970
2	부산	명지녹산	산단공	1989	29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공	2015
3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1977	30		새만금지구	새만금개발청	2019
4	대구	대구국가	산단공	2009	31	전남	여수	산단공	1974
5	인천	남동	산단공	1980	32		대불국가	산단공	1988
6	광주	광주첨단과학	산단공	1990	33		광양	산단공	1982
7	광주, 전남	빛그린	산단공	2009	34		삼일자원비축	(한국석유공사)	1991
8	울산	울산·미포	산단공	1975	35		전주탄소소재	-	2019
9		온산	산단공	1974	36	구미(1단지)	산단공	1969	
10	세종	세종스마트	-	2023	37	경북	구미(2~4단지)	산단공	1977
11	경기	반월특수지역	산단공	1977	38		포항	산단공	1975
12		파주탄현	산단공	1998	39		포항블루밸리	산단공	2009
13		용인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	2024			구미하이테크밸리	산단공	2009
14	경기, 충남	아산국가*	산단공	1979			40	월성원전	(한수원)
15	경기	동두천	산단공	2019	41		영주첨단베어링	산단공	2023
16		파주출판	입주기업체협의회	1997	42		안정	산단공	1974
17	강원	북평국가	산단공	1975	43		경남	창원	산단공
18	충북	보은	-	1987	44	진해		산단공	1982
19		오송생명과학	산단공	1997	45	밀양나노융합		산단공	2017
20		충주바이오 헬스	산단공	2023	46	경남항공		산단공	2017
21	충남	석문	산단공	1991	47	지세포자원비축		(한국석유공사)	1974
22		장항국가 생태산업단지	산단공	2009	48	옥포		-	1974
23		고정	(한국중부발전)	1978	49	죽도		-	1974
24		대죽자원비축	(한국석유공사)	1997	50	마산자유무역지역		마산자유무역 지역관리원	2024
25		논산국방	산단공	2024	51	제주첨단과학기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2004
26	전북	군산	산단공	1987	52	제주도	제주첨단과학기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2004
27		군산2	산단공	1989	53		제주첨단과학 기술2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2016

주: 1. 한 개 기업이 산업단지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 관리기관을 두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명을 괄호안 표시

2. 착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경우 배경 음영 표시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굵은 글씨 및 밑줄로 표시

* 아산국가(포승, 원정, 우정, 고대, 부곡) 5개 지구 중 부곡지구만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